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7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3
<참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는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소규모 학교의 설립 등) ①</u> <u>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u> <u>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u> <u>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학교는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u> <u>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u> <u>영을 할 수 있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u> <u>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원격수업을</u> <u>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u>

현행	개정안
	<u>의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교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폐교된 지역 학생의 통학 어려움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저해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더욱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폐교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폐교수	43	56	50	51	32	24	27	20	38	49	390

(자료 :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지역의 학생 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는 다른

학교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이탈을 막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쇠퇴를 방지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설치 및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인바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규모와 통학거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¹⁾.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²⁾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
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규모에 따른 분류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 다만, 같은 법 제4조³⁾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도록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 17. (생략)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 학교규모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학교의 설립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교사(校舍), 체육장 등의 기준면적은 원칙적으로 학생수별로 정하면서 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⁴⁾.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분교’⁵⁾를 설치할 수 있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⁶⁾⁷⁾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체육장)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6)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유형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됨.

7)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의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학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상 분교 및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역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설립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도시형캠퍼스 관련 법에 따라 소규모학교 설립이 가능하여 관련 법령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분교 현황]

(25.4.1. 교육통계 기준 공립 초·중·고)(단위 : 교)

시도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본교	분교	계	비율	본교	분교	계	비율	본교	분교	계	비율	본교	분교	계	비율
계	6,102	137	6,239	2.2%	2,651	15	2,665	0.6%	1,423	1	1,424	0.1%	10,176	153	10,329	1.5%
서울	569	-	569	0.0%	279	-	279	0.0%	115	-	115	0.0%	963	-	963	0.0%
부산	297	-	297	0.0%	136	-	136	0.0%	63	-	63	0.0%	496	-	496	0.0%
대구	234	1	235	0.4%	92	1	93	1.1%	46	1	47	2.1%	372	3	375	0.8%
인천	259	7	266	2.6%	135	-	135	0.0%	94	-	94	0.0%	488	7	495	1.4%
광주	151	1	152	0.7%	66	-	66	0.0%	24	-	24	0.0%	241	1	242	0.4%
대전	149	3	152	2.0%	74	-	74	0.0%	34	-	34	0.0%	257	3	260	1.2%
울산	122	1	123	0.8%	62	-	62	0.0%	45	-	45	0.0%	229	1	230	0.4%
세종	55	-	55	0.0%	28	1	29	3.4%	21	-	21	0.0%	104	1	105	1.0%
경기	1,350	15	1,365	1.1%	593	-	593	0.0%	358	-	358	0.0%	2,301	15	2,316	0.6%
강원	343	10	353	2.8%	145	-	145	0.0%	94	-	94	0.0%	582	10	592	1.7%
충북	253	12	265	4.5%	110	-	110	0.0%	60	-	60	0.0%	423	12	435	2.8%
충남	411	9	420	2.1%	144	1	145	0.7%	82	-	82	0.0%	637	10	647	1.5%
전북	405	2	407	0.5%	159	-	159	0.0%	63	-	63	0.0%	627	2	629	0.3%
전남	420	34	454	7.5%	216	5	221	2.3%	99	-	99	0.0%	735	39	774	5.0%
경북	464	21	485	4.3%	184	5	189	2.6%	91	-	91	0.0%	739	26	765	3.4%
경남	507	15	522	2.9%	190	2	192	1.0%	114	-	114	0.0%	811	17	828	2.1%
제주	113	6	119	5.0%	38	-	38	0.0%	20	-	20	0.0%	171	6	177	3.4%

[특별·광역시, 20만 이상 도시 분교의 ‘도시형 캠퍼스’ 유형별 분류]

(단위 : 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개관형	산설형	계	개관형	산설형	계	개관형	산설형	계	개관형	산설형	계	개관형	산설형	계
계	53	2	55	6	1	7	1	-	1	25	1	26	21	-	21
초	49	-	49	6	-	6	1	-	1	21	-	21	21	-	21
중	4	1	5	-	1	1	-	-	-	4	-	4	-	-	-
고	-	1	1	-	-	-	-	-	-	-	1	1	-	-	-

(자료 : 교육부)